

[통영] 공무원근로자(통계조사관) 신규 채용공고

국가데이터처 통영사무소에서는 경상조사 및 연간·특별조사 전반을 수행할 공무원근로자(통계조사관) 신규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5. 7.
국가데이터처 동남지방데이터청장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2025. 10. 1.)

1. 채용인원 및 근로조건 등 계약사항

채용분야	근무부서 ¹⁾	채용인원	채용예정일 ¹⁾	계약방법 (장년)	근로조건	기본급 (호봉제)
공무원근로자 (통계조사관)	국가데이터처 통영사무소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355)	1명	2026. 7. 1.(수)	근로계약 (만 60세)	1주 40시간, 주 5일 근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	금1,961,650원 (1호봉 기준)

1) 향후 상황에 따라 근무부서(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며 수습기간(채용일로부터 3개월) 평가결과에 따라 공무원근로자로 정규임용(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
※ 공무원 근로자의 처우는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국가데이터처 취업규칙』, 『국가데이터처 임금협약서』 등을 따르며 수습근로자의 모든 처우는 공무원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2. 담당업무

담당업무	세부내용
현장조사 관련업무	○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현장 조사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 - (표본 관리) 조사대상처(응답자)와의 유대관계 형성 및 유지, 신규 조사대상처 설득 등 - (자료 수집) 통계조사 자료수집, 조사표 작성 및 내용검토, 자료 입력 등 - (주요 조사)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집세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등 ○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 - (듣고 말하기) 대화 및 설득을 통해 조사업무 완수 - (걷기) 일반적인 보행 및 계단 이용 가능 - (시력) 조사표의 비교적 작은 글자를 읽을 수 있음, 태블릿PC 자료 입력 처리 가능 - (드는 힘/손작업) 조사표류 및 태블릿PC 휴대 가능/조사표 작성 및 태블릿PC 사용 가능

□ 수습근로 및 평가

- 수습기간: 채용일부터 3개월
-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
- 수습기간 3개월 종료전「공무직근로자 수습 평가」실시
 - 평가자: 담당팀장, 확인자: 부서장
 - 근무 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복무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수습 종료 10일 전 시행하는 평가 결과에 의하여 채용 여부 결정
 - 평가결과 미흡에 해당하여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7일 이내 서면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

3. 채용 방법

1차 서류전형(채용배제자 여부 확인) →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결격사유 유무 정보 확인(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 이중취업 여부 확인(겸업 불가) → 채용 확정(수습기간: 3개월) → 적격성 심사 → 정규 임용

□ 전형별 점수 기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자격증	기타점수 (장애인, 저소득층, 다자녀, 북한이탈주민)	경력, 자기소개서 등	면 접
5	5	90	100

※ 최종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의 채용시험에서는 국가유공자 관련 가점 적용 없음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 공무수행자로서의 소양 및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

-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
- 면접(2차)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에 따른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면접시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응시 자격요건(판단기준일: 공고일 현재)

응시 자격요건(판단기준일: 공고일 현재)

- ✓ **경상조사 업무가 가능한 자(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질의, 전산처리 등)**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9세 이상이며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
 - ※ 응시연령은 면접일 기준이며, 복수국적자의 경우 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 가능
- ✓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성실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 채용기간 동안 겸업 및 이중취업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단,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한적으로 겸업이 허용되는 자는 제외)
- ✓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채용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가점 및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취업지원 대상자) 우대: 1차, 2차 전형에 각각 적용

단,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가점 미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

5점	10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 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 애국지사의 가족,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 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가점 부여

5점	10점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가유공자법 제31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 3(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④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고 각 시험마다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각 시험의 가점합격자는 각 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실기·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 우대: 1차 전형에 반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북한이탈주민 우대: 1차 전형에 반영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0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이상인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이상인자
- 다자녀 양육자: **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불합격 처리 대상

- 채용서류 미비자, 허위 작성자(2년간 불합격 처리)
- 최근 3년간 국가데이터처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자(구: 통계청)
-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2년간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소속기관 포함)와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한 자
 - * 불가피한 경우로 합리적인 사유(질병, 가족간호, 타지역 이사,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 정규직 채용 등)
 - ** 합격자 발표 후 채용일(교육포함) 이전에 포기한 경우는 제외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근로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제(40시간), 1일 8시간(9시~18시) 근무
- 보수: 국가데이터처 공무원근로자 호봉표에 의거
 - 기 본 급: 1호봉 기준 1,961,650원
 - 수 당: 정액 급식비(월 140,000원), 표본관리비(월 200,000원), 명절휴가비(연 2회, 설날/추석 기본급의 60%)
 - 기 타: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6. 채용 일정

- 채용공고: '26. 5. 7.(목)~'26. 5. 22.(금) (16일간)
- 지원서 접수: '26. 5. 7.(목)~'26. 5. 22.(금) 18:00 **도착분**
 - 채용담당자가 등기우편 도착 후 접수 번호 안내(**마감일까지 접수 번호 미 안내시 확인 바람**)
- 1차 서류전형 심사: '26. 5. 28.(목) 14:00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일정 통보: '26. 6. 1.(월) 17:00
 - 나라일터,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통보(SMS 발송 등)
- 2차 면접전형: '26. 6. 5.(금) 14:00~

근무부서	면접장소	대기장소	연락처
국가데이터처 통영사무소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355 국가데이터처 통영사무소 2층 중회의실	1층 휴게실	055) 640-0700

- 최종합격 발표: '26. 6. 9.(화) 11:00~
 - 합격자 나라일터,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통보(SMS 발송 등)
- 근로계약 및 교육: '26. 7. 1.(수)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등 필요서류 작성
 - 교육: 복무, 보안교육 및 지침서 관련교육 실시
- 수습 근로자 근무시작일: '26. 7. 1.(수) 예정
 - ※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6. 5. 7.(목)~'26. 5. 22.(금) 18:00 도착분
- 접수방법 및 접수처

접수방법	담당자	접수처	전화번호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조사지원과 이현정	(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거제동 501)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9층 동남지방데이터청 조사지원과	전화: 051) 850-3334 팩스: 051) 850-3349

-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채용담당자가 등기우편 도착 후 접수 번호 안내(**마감일까지 접수 번호 미 안내시 확인 바람**)
- 접수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전형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8. 제출서류

- ① [필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첨부1】
- ① [필수] 응시원서 1부【첨부2】
- ② [필수] 자기소개서 1부【첨부3】
- ③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1부【첨부4】
- ④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 ⑤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 ⑥ [해당자] 운전면허증 사본
- ⑦ [해당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5】
 - ※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 이용 동의자에 한함
- ⑧ [해당자]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 ※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및 일반경력증명서 제출
- ⑨ [해당자] 자격사항 증빙서류
- ⑩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서류
 - ※ ⑨, ⑩번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5】로 대체 가능
 - ※ 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털에서 제공하는 항목이 아닐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 직접 제출

□ 자격·우대사항 평가기준 상세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점수 반영 불가**)

○ 자격증(최대 5점) / 제출서류: 자격증 사본

점수	자격증
5점	빅데이터분석기사, 사회조사분석사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보안기사
3점	사회조사분석사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전산회계운용사1급
1점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2·3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

※ 2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기타점수(최대 5점) / 제출서류: 항목별 참고

항목	점수	제출서류
장애인	3점	장애인증명서
저소득층	2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세대주 관련 증빙서
다자녀양육자	2점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북한이탈주민	2점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여러 항목에 해당되어도 최대 5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5~10점) / 제출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단,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가점 미적용)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채용비리 관련 부정 합격자,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 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 채용 확인서 제출
- 채용 비리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조치실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 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6. 5. 22.(금)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채용담당자가 등기우편 도착 후 접수 번호 안내(**마감일까지 접수 번호 미 안내시 확인 바람**)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최종합격자는 근무부서에서 3개월간 수습을 진행하며, 종료 10일 전 수습 기간 평가를 통하여 정규 채용 여부를 결정함
 - ※ 평가 결과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문의 사항: 동남지방데이터청 조사지원과 채용담당자 **이현정 ☎ 051)850-3334**

【첨부1】 (필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채용구분	지원부서	성명	서명
공무직근로자(통계조사관)	통영사무소		(서명)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첨부2> 응시원서(필수)		
2. <첨부3> 자기소개서(필수)		
3. <첨부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필수)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필수)(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5. 주민등록등본(필수)(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6. 운전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7. <첨부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해당자에 한함)		
8.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국가데이터처 경력증명서	
	일반 경력증명서	
9. (우대사항)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0. (우대사항) 기타 증빙자료 사본(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저소득층, 다자녀양육자,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대하여 '제출 여부'란에 "○" 표시 후 함께 제출 ** 등기우편 제출 시,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과 실제 제출한 서류가 상이한 경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첨부2】 (필수)

동남지방데이터청 공무원근로자(통계조사관) 응시원서

업무명	경상 및 연간 특별조사 전반	분야	공무직 근로자 (통계조사관)	지원 부서	통영사무소	응시 번호	
성 명 (한글)				성 별			
				생년월일			
연락처	핸드폰번호		(도로명 주소)				
	주 소 (현 거주지 기재)						
	e-mail						
일 반 경력사항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내용			
	~						
	~						
국 가 데이터청 경력사항 (최근3년 이내)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내용			
	~						
	~						
	~						
	~						
자 격 사 항	구분	자격증명	등록번호	취득일자	시행처		
	전산						
	기타						
	(운전 면허등)						
기 타	☐ 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다자녀양육자 ☐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주 1」 거짓으로 작성 시 향후 2년간 채용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2」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붙임: 관련 증명서류(저소득층 및 장애인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자격증 등)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0. 응시번호: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1. 성명·성별·생년월일·휴대전화·e-mail: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2.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3. e-mail: 본인의 해당 이메일을 “ID@가입회사”형태로 기재합니다.

(예) hongildong@hanmail.net

4. 일반 경력사항: 콜센터 근무, 지자체 조사원 등 국가데이터처 이외의 경력을 기재합니다.(기재한 경력은 증명서 제출 필수)

*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5. 국가데이터처 경력사항(구: 통계청)

: 통계조사, 분석, 전화민원 상담원 등 국가데이터처 경력을 기재합니다.

(기재한 경력은 증명서 제출 필수)

* 나라통계 1.0(<https://www.narastat.kr/>) > 로그인 > 경력증명서 발급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2026. 10. 1.)

6. 자격사항: 자격증명, 등록번호, 취득일자, 시행처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업무와 관련되는 자격증만 기재)

7. 기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북한이탈주민은 해당란에 체크

<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

○ 작성방법: 지원부서 작성, 1장 이내 준수,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 자기소개서 작성 (자유롭게 작성)

- 지원하는 업무에 대한 경력(국가데이터처 경력 등), 과거 일반경력 등
- 직무수행 계획, 관련분야 활동·업적 등을 기술하되, 채용 직무에 대한 필요 역량 보유, 안정적 직무수행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요약하여 작성
- 지원동기 및 포부 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첨부3】 (필수)

동남지방데이터청 공무원근로자(통계조사관) 채용 자기소개서

업무명	경상 및 연간 특별조사 전반	분야	공무직 근로자 (통계조사관)	지원 부서	통영사무소	응시 번호	미기입
○ -							
작성일자					2026년	월	일
인					(인, 서명)		

※ 지원부서 작성, 1장 이내 준수,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첨부4】 (필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국가데이터처는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공통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	채용절차 진행, 본인확인, 이중취업여부 확인, 경력증명서 발급용 기록관리	미채용자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자격·경력·학위·저소득·다자녀·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 등취업지원대상자·비자종류(외국인)		채용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해당자> 장애 종류 및 등급	근로자 채용 관리	미채용자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채용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가데이터처 동남지방데이터청장 귀하

【첨부5】 (해당자만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국가데이터처 동남지방데이터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원 근로자 채용 및 관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대상	행정정보명	이용 대상	행정정보명
☐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	장애인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다자녀 양육자)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지원대상 증명서는 별도 개별 제출 필수		
☐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이용 대상 행정정보명에 체크(☑)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